

단 신

미국 산업의학이 직면한 도전

김 규 상

본 글은 1992년 10월 7일 산업의학회 특별초청 강연을 한 James R. Nethercott의 "Current Challenges facing Occupational Medicine in U.S.A."를 정리한 글이다.

최근의 미국 산업의학 분야가 전문의학인과 대중들 사이에서 천천히 인식되기 시작했다. 산업의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질 수 있다.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복지를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할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장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이다. 이는 소아과학이 소아를 다루듯이 근로자에 초점을 두는 특이한 분야이다. 우리는 신체 장기에 바탕을 둔 의학 전문의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일반 대중들이나 의학분야에 산업의(occupational physician)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점차 일반대중은 직업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다루는 전문적인 의사들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사업장에서 건강을 해칠만한 폭로의 종류와 작업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에 바탕을 둔다. 석면과 관련된 악성 질환, 무수규산과 관련된 질환등은 최근 30년간 미국에서 중대한 쟁점이었고,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일반대중은 환경과 관련된 질환을 발견,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미국예방의학회(산업의학)에서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이는

임상 1년, 이론 1년, 그리고 1년간의 정부와 산업장에서의 실습기간으로 최소한 3년간의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분야에 있어서 1,60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있고 수십년동안 전문의 자격이 주어져 왔지만, 여전히 산업의학 전문의 수는 현재 인력의 2~3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전문분야가 타분야에 비해 특수성을 갖는 것은 이 분야가 근로자들과의 임상적 상호관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이나 통계학, 독성학, 행정 등에 대한 기술을 갖춘 임상적 능력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예방의학 분야이지만 임상의학적 특징도 어느정도 갖고 있다.

환경에 대한 산업분야 영향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이 공장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공장주변 주민들이 근로자들보다는 저농도로 그러한 산물에 폭로되었을 때의 영향까지도 살펴보려는 좀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된다. 저농도로 폭로된 전 지역주민의 공업산물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환경의학적 원칙에 근거해서 다루어진다. 지난해에 ACOM(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은 산업보건의들이 그러한 환경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산업화된 나라들에서는 의료종사자들 중에서 이러한 특별한 전문분야에 대한 필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직업과 질병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은 최근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설치하였고, 노르웨이는 이러한 전문의에 대해 현재 고려중이다.

1990년 ADA(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는 미국에서의 산업의학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모든 직업인들은 이 새로운 입법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미국산업의학에 줄 영향뿐 아니라 그것이 산업사회에 가져다 줄 변

화때문이기도 하다. 이 법안의 사회적 원칙은 근로자들은 고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률하에서 사용자의 의무는,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직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essential components)”를 어떤 한 근로자가 행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여서 다른 근로자들이나 그 자신이 위험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작업 업무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reasonable accommodations)”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 근로자 및 산업의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작업의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 이 법은 주어진 질환이 작업의 본질적인 기능저하에 민감하고 특이한지를 결정하는 데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어떤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없다는 점과 어떠한 경우라도 질병을 가진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 일반화되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산업의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의는 어떤 작업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근로자의 작업을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산업의의 역할은 늘어났으나 동시에 어떤 근로자가 어떤 작업수행에 장애가 되는 장애를 가졌다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없이 그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법률에 포함된 또 다른 원칙은 “합리적인 조정”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장애자가 본질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작업의 변화 필요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용자가

제공을 하던, 합리적이던 어떤 조정을 필요로 하는지 자주 관련을 맺는 산업의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f 1970)은 20년이 넘었으며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확실히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때이다. 소규모업체들을 제외한 모든 노사의 건강-안전 노동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대안이 제안될 것이다. 새 법안은, 만일 통과만 된다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것은 1973년 토론토 대학의 James Hamm 교수가 카나다의 노동법을 검토할 때 언급한 것 같은 산업장내에서의 “내부 책임 시스템(Internal Responsibility system)”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무리 많은 정부의 감독관도 근로자의 건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어, 안전한 사업장이 되려면 사업장의 각종 부분이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인들은 GNP의 12%를 건강관리 분야에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때 그들은 그만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2000년 대에는 GNP의 20%가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상승하는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산업의를 찾게 됨에 따라 산업의학은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근로자들의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지출액이 촍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의학적 치료에 대한 지불체계와 장해보험도 다음 10년 이내에 바뀌게 될 것이다.

ADA와 그와 같은 법률이 다른 나라의 산업의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의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질병과 장애의 발생을 인지하고 예측하며 또한 비용효과면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의가 이 분야에서 살아남자면 이와 같은 도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